불법온라인사행산업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(한지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186 발의연월일: 2024. 12. 3.

발 의 자:한지아·백종헌·이인선

김소희 • 고동진 • 최보윤

임이자 · 조경태 · 서일준

김재섭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2022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발표한 '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'에 따르면 전체 불법도박 규모 약 102조원 중 온라인 불법도박 규모가 약 37.5조원으로 추정되는 등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으로 인하여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.

또한, 여성가족부가 약 88만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'사이버 도박 진단조사'결과 사이버 도박 문제 위험군으로 조사된 청소년이 약 2.9만명에 달하는 등 온라인의 익명성 및 접근성으로 인하여 청소 년이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이용하는 경우 역시 증가하고 있음.

그런데, 「형법」이나 「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」과 같은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방 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, 불법온라인사행산업으로 얻게 되는 수익에 비하여 처벌이 가벼워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이 계속하여 성행하고 있다 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불법온라인사 행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온라인사행산 업을 효과적으로 단속·제재 및 근절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함 으로써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근절하고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에 따라 설립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함) 또는 수사기관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회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에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금융회사는 특별한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(안 제4조).
- 다.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불법 온라인사행산업 이용자로 참여하여 불법온라인사행산업과 관련된 정보제공, 홍보, 중개·알선, 운영 등을 직접 확인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.
- 라. 금융감독원은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로 지정하고, 금융회사는 전

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지 않도록 함 (안 제7조).

- 마.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).
- 바.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함(안 제13조).
- 사.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가 불법온라 인사행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7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·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·정지 또는 제 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4조).
- 아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령에 따르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사행행위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불법은라인사행산업에 대한 벌칙 근거를 마련함(안 제16조).

법률 제 호

불법온라인사행산업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

제1조(목적) 이 법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근절하고 건전한 사회질서 유 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불법온라인사행산업"이란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 제2조 제3호다목에 따른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2. "불법온라인사행산업 운영자"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.
- 3. "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"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관련 자금이 송금·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.
- 4. "금융회사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 - 가.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
 - 나.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
 - 다.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
 - 라.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

- 마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 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
- 바.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
- 사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 협은행
- 아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
- 자.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
- 차.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
- 카.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
- 타. 그 밖에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- 5. "전자금융거래"란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거래를 말한다.
- 6. "불법수익"이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으로 얻은 재산, 그 행위의 보수(報酬)로 얻은 재산이나 불법온라인사행산업과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말한다.
- 7. "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"이란 불법수익의 과실(果實)로서 얻은 재산, 불법수익의 대가(對價)로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 로서 얻은 재산, 그 밖에 불법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으로 얻은 재

산을 말한다.

- 8. "불법수익등"이란 불법수익,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을 말한다.
- 제3조(불법수익등의 추정) 불법수익등을 산정할 때에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운영자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업으로 한 기간에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가액이 그 기간 동안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운영자의 재산 운용 상황 또는 법령에 따른 지급금의 수령 상황 등에 비추어현저하게 고액(高額)이라고 인정되고, 그 취득한 재산이 금액 및 재산 취득 시기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을 통하여얻은 수익으로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수익등으로 추정한다.
- 제4조(지급정지) ①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에 따라 설립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 또는 수사기관은 불법 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회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 요구를 받은 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 야 한다. 다만, 제1호에 따른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

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 시하여야 한다.

- 1. 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의 명의인 (이하 "명의인"이라 한다)
- 2. 위원회
- 3.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
- 4. 「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치된 금융감독원(이하 "금융감독원"이라 한다)
- ④ 그 밖에 지급정지의 절차와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5조(자료조사) ①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자로 참여하여 불법온라인사행산업과 관련된 정보제공, 홍보, 중개·알선, 운영 및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에 대한 자금거래 흐름을 직접 확인하거나 조사하게할 수 있다.
 - ② 그 밖에 확인 및 조사 범위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조(조사권의 남용금지)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,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- 제7조(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

- 한) ① 금융감독원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자(이하이 조에서 "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"라 한다)로 지정하여야 한다.
-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, 수사기관, 금융회사 및 명의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.
- ③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제9조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제한이 해제된 때에는 전자금융 거래제한대상자의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위원회, 수사기관, 금융회 사 및 명의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8조(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)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제7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위원회에 지급정지,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대하여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 - 1. 해당 계좌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
 - 2.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로부터 자금을 이전받은 사실이 있

- 으나, 이전받은 자금이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이미 인출되어 계좌에 남은 잔액이 불법온라인사행산업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
-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접수하고 이의제기 사실을 즉시 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 다. 이 경우 금융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④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지급정지 등의 종료)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급정지 및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한다.
 -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 - 가.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손해배상·부당이득 반환 등의 청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
 - 나.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압류·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
 - 다.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「국세징수법」에

따른 체납절차가 개시된 경우

- 라.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
 2. 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제8조에 따른 이의제기가 합당하다
- 3.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불법온라인사행산업 이용계 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
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고 통지한 경우

- ②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명의인과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, 관련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10조(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) ① 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1조(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) 금융회사, 금융감독원 및 위원 회는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「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도 불구하고 요청·제공하

거나 공고할 수 있다.

- 제12조(포상금) ① 위원회는 불법온라인사행산업 관련 범죄에 대하여 위원회에 신고한 자 또는 불법수익등의 환수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또는 공로의 범위, 포상금 지급의 기준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 으로 정한다.
- 제13조(신고자 등에 대한 형의 감면)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함으로 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- 제14조(불법온라인사행산업 정보에 대한 조치)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가 불법온라인사행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7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·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·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.
- 제15조(국제협력) ① 정부는 불법온라인사행산업의 방지를 위하여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.
 - ② 위원회는 해외사업자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불법온라 인사행산업을 광고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국제적인 협조 관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.

- 제16조(벌칙) ①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(이하 "정보통신망"이라 한다)을 통하여 법령에 따르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사행행위(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「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」에 따라 허가받은사행행위영업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.
 -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령에 따르지 아니한 복표의 발매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행행위를 하는 시스템을 설계·제작·유통하거 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발매된 복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행행위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홍보, 중개·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
 - 2. 거짓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한 자
- 제17조(국외범) 제16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같은 조의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한다.
- 제18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

-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19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1.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금융회사
 - 2.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한 금융회사
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1.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
 - 2.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하지 아니한 금융회사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가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